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2 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이학영·김민철·박완주

양이원영ㆍ이동주ㆍ이성만

이장섭 · 임호선 · 정필모

한병도 · 홍성국 · 홍익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건물,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 반하는 경우 시·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 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,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·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.

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,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4항, 제1 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"을 "환경친화적"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"위탁"을 "위탁·위임"으로 하고,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단속 업무를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(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을 말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			
충전시설 등) ① ~ ③ (생	충전시설 등) ① ~ ③ (현행과				
략)	같음)				
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	4				
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					
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	<u>환경친화적</u>				
<u>화적</u>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					
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					
다.		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	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			
제15조(업무의 <u>위탁</u>) (생 략)	제15조(업무의 <u>위탁·위임</u>) ①				
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				
<u> 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는 제11조의2제6				
	항에 따른 단속 업무를 시장				
	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				
	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				
	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				
	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				
	<u>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</u>				
	<u>있다.</u>				
제1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16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				
	같음)				

3	제1	항 5	및 자	112항	에	따른	_	과
태호	昆는	관할	할 스) · 5	E지.	<u>사</u> 기	}	부
과	• 징=	수하	며, 3	라태크	료를	부	과	하
는	위빈	·행우	의	종류	와	위변	1	정
도여	에 띠	-른	과태	료의	금	액	등	은
대통	통령리	것 ㅇ	로 ス	첫하다	}.			

③
<u>시 · 도지사(제15조</u>
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이 시장ㆍ
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
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을 말
<u>한다)</u>